

평창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9.17 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9. 26(금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9. 30(화) 제15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4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가. 국토의 계획적·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2003.1. 1부터 시행되었으며, 동 법률에 따라 우리 군은 2008. 12. 31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군관리계획(관리지역 세분) 결정(변경)안을 입안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2015년 평창군관리계획(용도지역:관리지역 세분)결정(변경) 안
 - 평창군 관리지역 : 412.507km²(세분면적344.731km², 미세분면적 67.776km²)

구 분	면적(km ²)	비율(%)	비고
보전관리	92.83	26.92	※구적면적으로서 최종고시시 확정하게 됨
생산관리	51.01	14.79	
계획관리	200.891	58.29	

* 미세분 면적은 산지이용구분도와 용도지역의 불일치 지역으로서 산지이용구분도 확정고시후 군 관리계획 변경예정임.

4. 검토결과

- 본 의회의견 청취안은,
 -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관리지역세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우리군 관리지역 412.507km²에서 세분면적 344.731km²에 대한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,
 - 보전관리 92.83km², 생산관리 51.01 km², 계획관리 200.891 km²이고, 미세분면적 67.776 km²는 산림청의 산지이용구분도와 용도지역 불일치 지역으로 산지이용구분도 확정고시후 군 관리계획 변경예정임.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“건설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위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9조 제2항을 보면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 - 이와관련 적정기한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나, 우리지역은 한강수계, 백두대간, 자연환경지역 등 이중삼중의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, 관리지역내 세분화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.

평창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9.17 (수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8. 09. 26(금)
- 다. 상정일자 : 2008. 09. 30(화) 제15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4차 본회의

2. 제안이유

- 가.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당초 대량 재배되는 주요생산지 또는 한약재의 유통거점에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 창고 등을 건립하여 소비자에게 상시적으로 보관 공급할 수 있는 유통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과정에 우수한약재의 품질검사·전처리가공·판매 종합적인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국산 한약재의 품질관리 확산, 한방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임대형 민자사업(BTL)으로 평창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자체(평창,제천,안동,진안,화순)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.
- 나. 따라서 당초 우리군은 농림지역(농업진흥지역)에 시설 가능 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통시설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용도지역(농림지역)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 조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- 가. 입안내용
 - 용도지역결정(변경), 군계획시설결정(유통업무설비, 도로)
 - 용도지역 변경 : 농림지역 23,248㎡, 관리지역 2,652㎡ → 계획

관리지역 25,900㎡

- 군계획시설 결정 : 유통업무설비시설 25,900㎡
- 도로결정(진입도로) : 소로2류 연장 464m(면적 3,852㎡)

4. 검토결과

- 본 의회의견 청취안은,
 - 기존의 농림지역 23,248㎡, 관리지역 2,652㎡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 25,900㎡로 변경하여 유통업무설비시설 부지로 사용하려는 것으로,
 - 진부면 송정리 2241-2번지 일원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우수한 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하려는 사항임.
- 위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
 - 관련법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, 향후 관리운영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준비가 필요함.